

「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」 전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71호, 2023. 8. 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 수행기관 변경(지침 전반)

지방국토관리청이 위임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으로

관련 규정을 정비

나. 협의매수 대상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8조의2 개정 및 제11조·제11조의2·11조의3)

지방국토청장은 매도신청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수 결정

다. 매수토지 임대 대상 확대 및 시설물 설치 범위 조정(안 제16조 및 제17조)

환경문화사업, 자연환경복원사업, 송전선로 선하지를 임대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문화사업,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화장실, 관리사무소 등도 국토부와 협의한 경우 시설물 설치 가능토록 함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녹색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
(정부세종청사 6동 4층, 우편번호 30103)
전화 : 044-201-3750(3752) 팩스 : 044-201-5574